



2022년도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I

농촌지도사업 기본방향



I. 농촌지도사업 기본방향

- ◆ 매년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신속한 기술보급을 위한 새기술시범 사업 및 시책사업과 교육훈련 등의 추진요령이 수록된 농촌지도사업 시행계획을 시달하여 사업추진 효과 제고
- ◆ 시군농촌진흥기관에서 도원 실시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활동을 전개할 시군단위 실시계획 수립시 기본자료로 활용

□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법률 제17316호, 2020. 5. 26일 일부개정) 제5조에 의거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의 추진계획이 포함된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신속한 보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활동을 전개할 지방단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가에 신속하게 새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을 보급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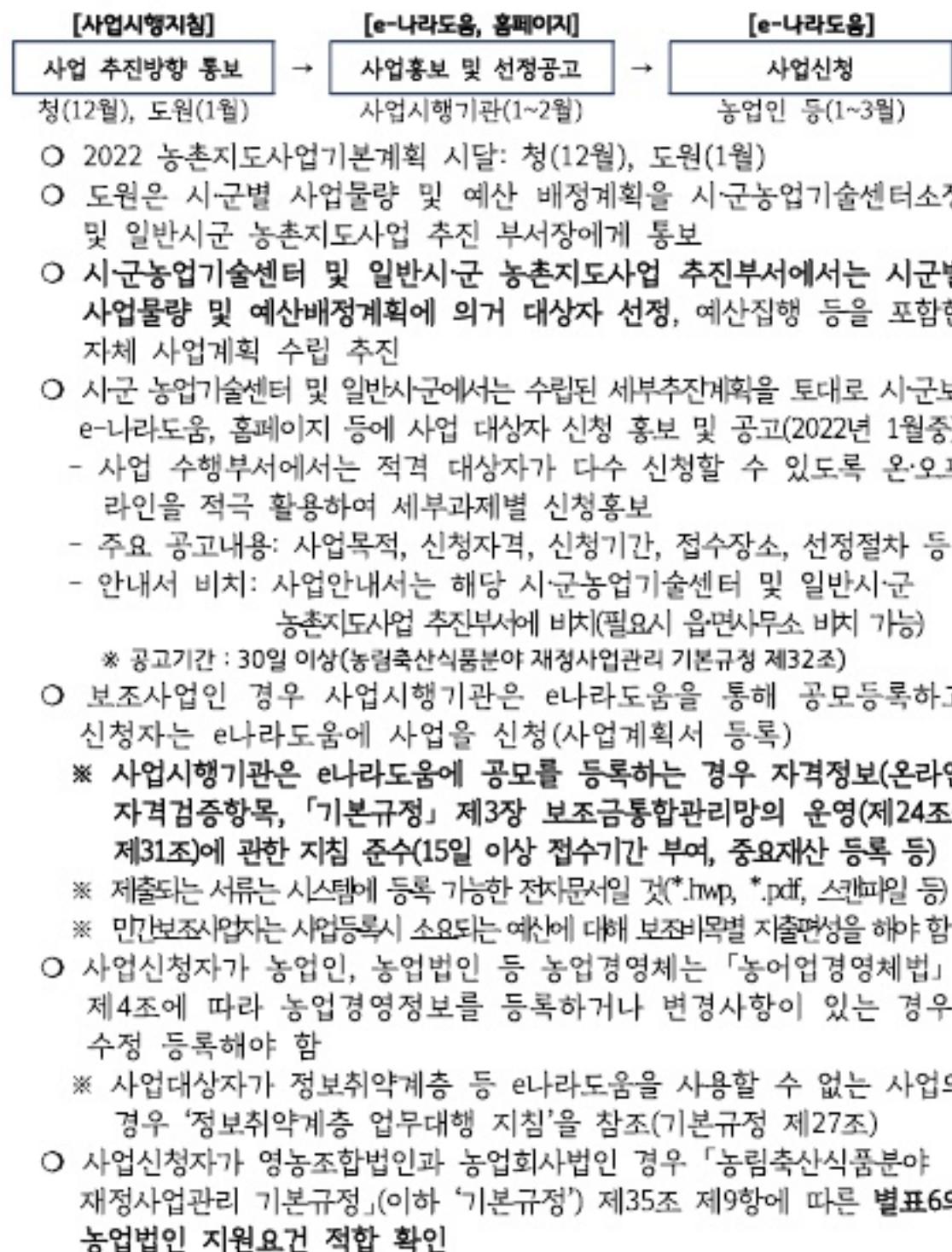
- 2022년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 기본계획 총괄
-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목표 및 시책방향
-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추진과제 및 내용
- 농업과학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등

□ 시군단위 2022년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수립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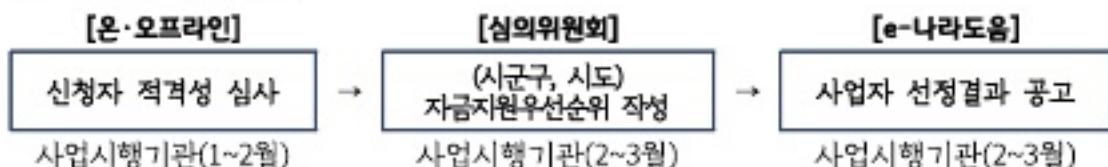
- 시군에서는 중앙과 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추진

1. 2022년 사업시행 추진체계

□ 사업신청단계



□ 사업자 선정단계



- 도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심사를 하되,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 실사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의 평가에 의하여 사업대상자 선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8항 각 호에 따른 중복편중지원 방지, 유사자금 지원여부 등 검토 및 확인, 제8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56조 제4항에 근거한 부당 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 2인 이상 현장조사 및 평가 실시
 - ※ 현장조사 사진첨부 등 공정성 확보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 등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
 -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 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업관련 기관, 대출취급기관 등의 사업검토의 의견을 수렴 반영 할 수 있음
 - 신기술 실증시험 사업장을 인근농가 교육장으로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업대상자 중 해당 사업과 연관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자를 우선 선정
 -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기간이 아닐 경우 사업 선정 후에도 사업 대상자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단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작목이 없는 경우 예외)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현장평가 결과 및 사업신청서 등을 심의
 - ※ 사업특성상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판단에 따라 선정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추후 산학협동심의회에 통보
- 도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일반사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는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산학협동심의회 등에 상정하여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일반사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장은 당해연도 3월 이전에 사업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확정하여 e-나라도움에 사업자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를 활용하여 농업기술원장에게 제출, 농업기술원장은 타당성 검토 후 농촌진흥청장에게 승인 요청

산학협동심의회 설치 및 운영기준

- 관리규정: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 위원회 구성(시군 기준): 20인이내(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
 - 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 위원: 당해지역 대학교수, 시군 농업관련 담당공무원, 선도 농업인 등
 - 주요기능: 신기술보급 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농업인력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등
 -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위촉시 행정·지도·학계 등 폭넓은 대상자를 위촉 (농업인학습단체, 퇴직농촌진흥공무원, 농촌진흥청 지역담당관 활용 등)
 - ☞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에서 제척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9조 사업성검토 참조

□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장은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 농업인에게 통보하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조건, 집행 절차 등의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
 - ※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농가의 경우 탈락 사유에 대한 우편 또는 전화 등을 통한 설명 추진
-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세부사업별 예산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 ATIS시스템에 등록
- 사업대상 농가는 통보일로부터 지정한 기일까지 사업시행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에 제출
- 보조금 교부 결정시 부기등기제도에 관한 사항을 보조조건에 명시
 - ※ 부기등기제도에 대한 사업대상자에게 교육·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제도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사업 계획 수립시 중점 사항

- 신기술보급사업은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만 사업계획에 포함
 - * 토지 매입비, 단순 농기계·시설 설치 등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비 편성 금지

- 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장은 사업시행계획서 승인 후, 사업대상자가 영농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시·군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장이 변경 승인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 * 사업별 시범요인 및 지원범위 안에서 시행·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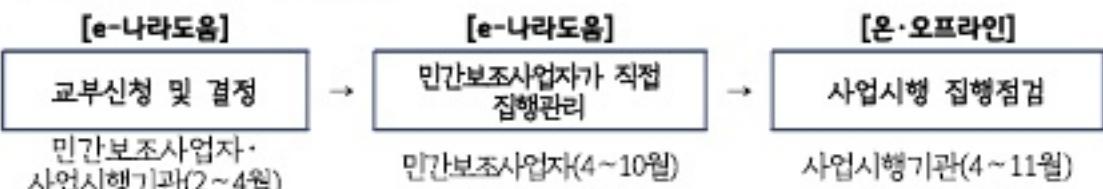
- 지원대상 사업자는 사업 신청서와 최종 확정 지원액 등을 근거로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시행
- 사업의 관리책임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72조제4항 별표3에 준하여 표찰(입간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새기술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 표찰(입간판) 설치규격은 대상을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안전관리 또는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약용작물 등의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제외 가능

<표찰 제작(안) 예시>

- 시설: 90cm × 70cm 소표찰(아크릴 또는 포맥스 부착형)
- 포장: 120cm × 90cm 중표찰(철판으로 기둥 2개설치)
- 표찰내용은 시범사업과 지역특성에 맞게 적의 조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술지원 내용에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시군공동사업 추진 표기
- 로고 사용시 농촌진흥청 로고(국비), 경기도 로고(도비)와 시군 로고 함께 표기
- * 농장(마을)입구, 건물 등 잘 보이는 곳에 설치

종군 활용 장류 품질 향상 기술 시범					
○ 종군 활용 장류 품질향상 기술로 전통장의 안전성 확보와 장류 상품화로 부가가치를 향상하여 농업농촌의 융복합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규모: 설치내역: ○ 사업내용 - 종군활용 콩알메주 제조 시설장비 및 위생설비 지원 - HACCP에 준하는 위생시설 및 설비					
기술지원: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전화: 000-0000)					
주 소	○○○	대 표 자	○○○	담당 지도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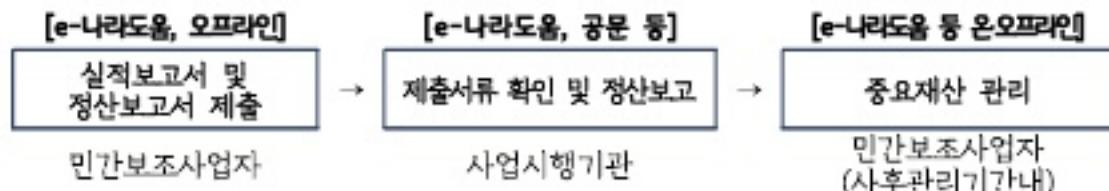
□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교부·집행) 증빙자료 제출(보조금 전용 계좌·카드 사용, 전자증빙자료 e나라도움 등록 후 지출) → 민간보조금 예탁(한국재정정보원) → e나라도움을 이용 직접 집행(계약, 집행정보등록, 지출 등)관리
 -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 전용 카드 등 국세청 등 중복지출 여부, 부적정사용 검증 후 집행
- * 신기술보급 사업: 비예탁형 교부(농업인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 보조사업자 계좌로 보조금 직접 교부)

- 사업 예산 집행시,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할 수 없음(농협 등)
- (모니터링) 온라인·오프라인 수시 점검(사업부서, 지자체)
 - 사업대상자 교육·기술지원,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수시 점검
 - 자금집행 적정, 위약,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 확인
- (실적보고) 사업 완료시 실적보고(2개월 이내, 정산보고 포함)
- 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사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및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규정 등의 절차에 의거 추진
- 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사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및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규정 등의 절차에 의거 추진
 -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養殖)에 대한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인 경우(공동개발된 농자재, 농기계 포함)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172호)"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지방 계약법령 적용 제외사유」로 적용하여 입찰시행 예외(13.민간자본이전 (402목), 확대해석 금지)
- * 단,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의 시급성,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되므로 사전에 지자체 예산부서 등과 협의를 통해 추진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 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사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가에 대해 학습기술과 경영기록장 작성요령 등을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을 실시
- 사업대상자는 농가경영기록장을 작성하고 사업완료시 해당 시·군에 제시하며, 사업장 방문 농업인 등에 대한 기록장을 비치하고 3년간 보관
 - * 노지 등 기록장의 상시 비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교육 내용을 결과보고에 기재
- 시·군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확인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사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규정 등의 절차에 의거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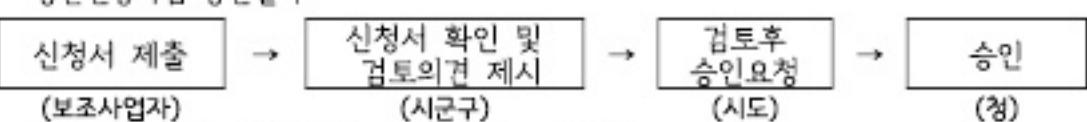
- * 사업 추진 중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처리
 -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②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③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장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수행여부를 확인
- 사업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부가기자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기자세 환급금을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 가능
 - * 부가기자세 환급금 재사용시 목적외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영내역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 (당초 집행계획 항목에 포함된 지출은 자체 변경, 항목 외 지출은 농업기술원 검토·승인 후 변경)
- 보조사업 대상자(1개 단체)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를 검증 받은 후 제출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반환 조치 후 10일 이내 농촌진흥청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통보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림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사후 관리: 보조사업 관련정보 대국민 공개(e나라도움)
 - (정보공시) 보조금 5백만원이상 교부받은 민간보조사업자
 - *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수입·지출내역, 정산보고서, 감사 자격사항, 재무재표 등
 - (중요재산) 부동산, 기계·장비 등 취득시 관련 정보 보고 및 공시
 - * 재산명, 목적·용도, 취득가액, 현재가액, 주소, 사진 등

- * 처분제한 및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장 사후관리, 제72조~제88조)에 따라 처분제한 등 사후관리

- 부동산과 그 종물(10년) * 유리온실 포함
-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5년) * 비닐하우스 포함
-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기본규정 제77조 적용) ⇨ 민간보조사업자가 별지 제19호 서식을 사업시행기관(시군농업기술센터)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농업기술원은 검토의견을 농촌진흥청 사업담당과(소속기관 기술지원과)의 승인의견을 득한 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최종 결과를 통보함

<농촌진흥사업 승인절차>



* 결과통보 절차: 농촌진흥청 → 도 → 시군 → 신청인(보조사업자)

- 중앙단위 사업이행 및 점검(연 4회) 의무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행 및 점검 실시
- 취득한 재산(부동산, 장비 등)는 기재부 재산등록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목록 제출(반기별) 및 사후관리 실시

□ 성과측정 단계

<개발신기술의 현장 실천율>

- 2021년도 추진한 신기술보급사업 추진한 과제 중 해당 기술요인을 2022년도에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으로 변화된 재배면적·농가
 - 조사기관: 농촌진흥청 사업담당부서(농업기술원 및 사군 협조)
 - 조사시기: 1월 ~ 12월
 - 조사내용: 개발기술 보급·확산을 통해 변화되는 재배면적 및 농가수

<수혜자 만족도 조사>

- 시범사업 추진실태, 기술지도 서비스, 지원자금의 적정성 등 사업운영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농정현장 중심으로 시범사업 수혜농가 등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연중(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조사기관: 농촌진흥청 사업담당부서(도원 및 사군 협조)
 - 조사대상: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 등 세부사업별 참여농가
 - 조사방법: 시군 사업담당자를 통한 설문(지) 조사

<경제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성과분석>

- 신기술보급사업 세부과제 중 종료과제를 중심으로 기술확산 및 지역 경제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등 사업 성과 측정
 - 조사시기: 5~12월 중
 - 조사대상: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 등 세부사업별 참여농가
 - 조사방법: 외부 연구 용역
 - 주요내용: 세부 과제별 기술 파급효과, 가치 평가 및 투자효과 등

□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세부사업별 시범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편성 및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등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농촌진흥청 세부사업별 담당부서(도원 및 시·군 협조)
- 평가기간: 11~12월 중
- 평가대상: 1년 이상 추진된 세부사업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 평가기준: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 시행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개최
 - 사업에 따라 인근농가와 대비하여 소득분석 실시
 - 인근농가의 기준: 동일지역내 동일작목, 유사규모, 유사작기 농가 중 해당 시범요인을 수용하지 않은 3농가 내외의 평균 경영성과
 - * 시범·인근농가 조사는 대표성 등을 고려 조사규모를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 가능
 - 농가별 조사한 세부자료는 시·군에서 별도로 관리하여 보관

<환류>

- 농촌진흥청 사업 담당부서의 자체 평가에 의하여 세부사업별 성과 달성이 차 낮게 나타나는 사업은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 등 구조조정 실시
- 세부과제 중 보완되어야 할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기관·부서에 환류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촌지도자육성계정)사업

○ 사업추진체계



○ 사업 신청단계

- 도원은 사업별 물량 및 예산배정 계획을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일반 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 부서장에게 통보
-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일반 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시군별 사업물량 및 예산배정 계획에 의거 사업대상자 추천

○ 사업자 선정단계

- 도원 품목전문가 및 인력육성팀 주관으로 심사를 하되,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실사와 농촌지도자 육성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하여 사업대상자 선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8항 각 호에 따른 중복·편중지원 방지, 유사자금 지원여부 등 검토 및 확인, 제8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56조 제4항에 근거한 부당사용 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 현장조사 사진첨부 등 공정성 확보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 등을 검증·검토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상정
※ 신청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 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업관련 기관 등의 사업검토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음
- 농촌지도자육성계정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현장평가 결과 및 사업신청서 등을 심의
- 도원에서는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및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된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장은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 농업인에게 통보하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조건, 집행 절차 등의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
- ※ 시범사업 선정에서 탈락한 농업인에게는 탈락 사유를 우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설명
- 사업대상 농가는 통보일로부터 지정한 기일까지 사업시행 계획서를 수립하여 시·군농업기술센터,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에 제출

사업계획 수립시 주의사항

- 신기술보급사업은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만 사업계획에 포함
- ※ 토지 매입비, 단순 농기계·시설 설치 등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비 편성 금지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장은 사업 시행계획서 승인 후, 사업대상자가 영농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의 요청에 대하여 검토 후 도원에 보고하고, 도원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보고 후 승인
- 지원대상 사업자는 사업 신청서와 최종 확정 지원액 등을 근거로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시행

○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교부) 농업농촌진흥기금(농촌지도자육성계정) 보조금 교부
- (모니터링) 온라인·오프라인 수시 점검(사업부서, 지자체)
- 사업대상자 교육·기술지원,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수시 점검
- 자금집행 적정, 위약,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 확인
- (실적보고) 사업 완료시 실적보고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장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및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규정 등의 절차에 의거 추진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사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가에 대해 핵심기술과 경영기록장 작성요령 등을 교육하고 현지 기술지원을 실시
- 시·군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 확인
- 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사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장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수행여부를 확인

※ 사업추진 중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처리

-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②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③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를 해야 됨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림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2. 2022년 농업 여건과 전망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고객확대 및 기술보급체계 다양화 방안 모색
 - 고령농 증가, 귀농·귀촌인 유입 등으로 인구구조 다변화
 - * 65세이상 농가인구 비율: ('15) 38.5% → ('20) 42.4, 귀농귀촌 인원: ('16) 488.5천호 → ('20) 490
 -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청년, 귀농·귀촌 등 미래고객 확대
 - * 40세미만 농가 경영주: ('00) 92천명(6.7%) → ('10) 33(2.8%) → ('19) 41(2.4%)
- 2021년 쌀 생산량 증가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농업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 확산 등 저탄소 재배 노력 필요
 - 생산량 증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산지가격 하락으로 경기미 경쟁력 취약
 - '21년 쌀생산량: 전국) 388만 2천톤(전년 대비 10.7%↑), 경기) 38만 3천톤(전년 대비 9.9%↑)
 - 1인당 쌀소비량: '00) 93.6kg/년 → '15) 62.9 → '18) 61.0 → '19) 59.2 → '20) 57.7
 - 산지가격 전망: 시장공급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
 - 경기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기술 및 직파재배 확산으로 쌀 생산비 절감 필요
 - 2050 탄소중립선언에 따른 농업분야 온실가스 저감 확산 필요
 - 탄소배출량('18): 총배출량) 727.6백만톤CO₂ 농축수산분야) 24.7백만톤CO₂
 - 감축목표('30): 총배출량) 291백만톤CO₂ 농축수산분야) 18.0백만톤CO₂
 - 온실가스 감축방법: 난방에너지절감 논물관리, 비료절감, 경축순환농업, 작지재배, 무경운 등 19개 방법
 - 자발적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등 유도책 필요
- 시장개방화 대응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밭작물 경쟁력 확보 시급
 - 밭작물 생산기반 취약: 다품목 소량 생산구조, 영세한 규모, 고령화
 - 기계화율('19년): (논농업) 98.6%, (밭농업) 61.9%
 - * 작업별 기계화율: 경운·정지(99.8%), 파종·정식(12.2), 비닐파복(73.0), 방제(93.2), 수확(31.6)
 - 취약한 생산기반과 최근 이상기상 및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불안정으로 가격변동이 심함
 - 국내산 · 수입산 가격차: 대두 4~2배, 옥수수 4~2배, 밀 4~1.6배
 - 주요 식량(사료용 제외) 자급률: 쌀보리 32.6%, 밀 1.2%, 옥수수 3.3%, 콩 25.4%

□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안정적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 필요

- 1인가구 증가 및 학교 급식 등으로 인해 국내 과일 소비 트렌드의 변화 가시화
 - 섭취 편리성이 높은 씨없는 포도, 중소과(미니), 껌질째 먹는 배 등 간편한 과일을 찾는 소비자 증가
 - 국내 육성 제철과일 출하를 위한 품종보급 확대(경기도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 친환경 인증을 위한 기술도입으로 공공급식용 안전과수 생산단지 조성
- 다자간 FTA체결,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농가인구 감소 등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 시설규모화, 기계화, 자동화 및 정밀농업 요구
- 온·습도, 일사량, 탄산가스 등 생육환경 정보 수집 및 데이터영농 필요
 - 작물(품목)선정, 정식시기, 병해충 진단, 재배 환경제어 등에 적용
- 전국 한우 사육 마릿수 역대 최대(‘22)353.6→(‘23)361.4만마리)에 따른 농가 단위 효율적 사육관리체계 필요
 - (사육·도축)가입암소·송아지 생산 증가(평년대비 3.9%) 등 24년까지 증가전망
 - (사료)곡물 수입단가(평년대비 60.7%) 및 배합사료(전년대비 17.7%) 상승세 지속
 - (대응)번식암소 도태와 선발, 계획적 송아지 입식·번식, 조사료 자급체계 확보
-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안정적인 사양관리 기술보급사업 전개
 - 기후변화대응·가축생체·유전정보 활용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체계 구축
 - 사육환경 개선으로 젖소 분만일수 평균 3일 감소, 비육돈 폐사율 2.8% 감소
- 축산·미생물 과학영농서비스 강화로 안전농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 (초유은행)운영확대(‘21)10→(‘22)11시군 및 송아지 폐사 77.1%·설사병 68.1% 감소
 - (유용미생물)농축산용미생물 활용으로 축사냄새 51.4%, 농약·비료 52.3% 감소

□ 외래·돌발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예찰 및 적기 방제

-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 온난화, 이상기상 현상 등으로 외래·돌발 병해충 급증
 - 1900년 이래 87종(병 40, 해충 47) 유입, 이 중 32종(36.8%)이 2000년 이후 발생
-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약충기·성충기 예찰 및 산림부서와 협업방제
 -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갈색날개매미충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발생지역 종점방제
-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 증기에 따른 적극적인 예찰 및 방제(8시군→10시군)
 - 사전 약제방제(3회), 중앙·지방 합동예찰(4회), 매몰지 관리(377개소)
- PLS 및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에 따른 농약안전사용 교육 강화
 - 등록된 농약 사용 및 부적합이 높은 작물, 농약 위주 컨설팅 추진

□ 신소득분야 곤충산업 육성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곤충이 지구촌 기근과 영양부족 등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여 곤충식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
 - 전세계적으로 1,900종의 곤충을 약 20억명이 식용으로 이용
- 식용 및 학습애완곤충 등의 홍보강화로 곤충생산농가가 크게 늘었으나 수요는 정체되어 신규농가 경영유지에 어려움
 - 유통개선, 홍보강화, 경영비절감 기술 등으로 곤충산업 발전 필요

□ 양봉산업 및 양잠산업의 중요성 증가

- 소자본 투자, 귀농·귀촌의 증가 등으로 신규 양봉농가가 늘어나 농업·농촌 발전에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매김함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9.08.27.), 시행(2022.08.28.)
- 누에가루, 동충하초, 오디, 의료용 소재 등 양잠산물의 다양화 및 가능성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양잠산업 발전 기여

□ 농촌융복합산업화를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 (식품산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에 대비한 식품·외식산업의 제도정비 및 지속 성장 기반 구축
 -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실현 및 미래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 마련
 - * 제5차(2021~2025)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21.2. 식약처 등 10개 부처)
 - 1인 가구, 맞벌이 증가로 인한 식사문화 및 온라인 식품시장 성장
 - * 가정간편식 시장: ('10~'18) 연평균 16.1% ↑, 매출액 ('19) 4조 2,220억('20.KREI)
 - * 온라인 식품시장 규모: ('18) 18.7 → ('19) 26.9 → ('20) 43 → ('21) 50조원 이상(통계청)
 - (농촌관광) 소규모·가족단위, 치유·근교·단기 등 독특한 여행 콘텐츠에 대한 관심 증가 등 국민의 관광수요 변화
 - 가족여행, 개별여행 등 소규모 관광행태는 점차 증가할 전망
 - * 여행동반 인원: ('18) 4.9명 → ('19) 4.3 → ('20) 3.2 ('21, 국민여행조사)
 - 안전실외 청정지역 및 건강·치유·목적의 관광수요 대응 정책확산
 - * 소규모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운영, 안전농촌여행지 선정, 농촌관광 할인 지원 등

□ 재해예방 실천문화 확산 및 농촌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 농작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율이 전체 산업 재해율보다 1.4배 높아 재해 감축방안 마련 필요
 - * 농산업 재해율: 0.81%, 전체산업 0.57%(통계청, 2020)

- '18.5월 시행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5년마다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됨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농촌은 급속도의 초고령사회 진입 및 인구과소화 상태이며, 사회 서비스 등 사각지대 발생과 노년기 경제적 어려움이 소외·우울, 빈곤 등을 심화
 - * 농촌 고령화율(통계청, 2019) : 전국 농촌 고령화율은 46.6%로 전체 고령자 비율 15.5%의 약 3배
 - * 농촌 65세 이상의 8.9%는 자살생각 경험, 1.1%는 실제 자살 시도(건강, 빈곤, 외로움이 주요인)
-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속에서 농업경영비가 증가하고 있어 기계화, 자동화, 정밀농업 등 기술로 노동력 보완 필요성 증대**
 - 농가인구: '00) 412천명 → '19) 282천명(31.6% 감소)
 - 농업경영비: '00) 18.9백만원 → '19) 26.9백만원(42.3% 증가)
 - ※ 통계청 농업통계(경기도 기준)
- 농업·농촌의 치유적기능을 활용한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공감 확산**
 - 도시농업, 농촌체험, 치유농업 활성화로 농업·농촌이 가진 가치증대
 - * 식물재배 활동사: (청소년) 분노공격성 64.5%↓ (성인)행복호르몬 55%↑, (노인) 우울감 60%↓
 - 도시농업·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통한 공익적 일자리 창출
 - * 도시농업 관리사, 치유농업사를 활용한 교육 및 현장 치유체험프로그램 운영

3. 농촌지도사업 기술보급 추진방향

□ 미래농업 변화 대응 농촌지도 기반 구축

- 지역농업 여건에 맞는 지도기반 과학영농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 추진
- 농촌지도공무원 역량 강화로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

□ 신속하고 정확한 농촌진흥사업 홍보 강화

- 신문 및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정책 홍보 활성화
- 홍보물 활용 주요성과 및 신기술 홍보
- 디지털 농업 등 정책이슈를 SNS 활용 농촌진흥사업 홍보

□ 농업·농촌의 핵심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 농업인학습단체별 대표적 공익활동 추진으로 정체성 확보
- 새로운 기술의 선도적 수용 및 후계농업인 양성 등 농촌지도자회를 지역리더로 양성
- 농촌여성 권익향상과 도농문화 교류를 이끌어가는 생활개선회 육성
- 청년농업인 4-H 회원의 안정적 영농정착지원 및 4-H 재도약 기틀 마련
- 최고의 농업기술전문가 선정으로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위상제고
- 품목농업인연구회 주도의 자율적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과 확산 유도

□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교육

- 농업·농촌의 미래를 선도하는 농업기술혁신 전문인력 양성: 100명
-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영농정착하는 신규농업인양성: 325명
- 농업기계·품목별 전문 농업인 육성: 200명
- 미래농업을 이끄는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개발: 220명

□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 및 안전먹거리 확보

- 경기도육성 및 지역특화 품종 중심 우리품종 정착: '21) 60 → '22) 64%
-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벼 재배기술 확산: 11개소, 270ha
- 탄소증립선언에 따른 벼 탄소저감기술 실천 확대: 9개소, 220ha
- 기능성 신품종 밭작물 보급 및 가공유통 연계 상품화 확대: 20개소, 338ha
- 밭작물 생산비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 유도: 14개소, 46ha
- 안전먹거리 생산지원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강화: 10개사업 69개소
 -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확대: '20) 10 → '21) 13 → '22) 14개소

□ 원예·특작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보급

- 소비자 선호형 국내육성품종 확대와 생산성 향상
 - 신소득작목 육성 및 국내육성 품종 보급 확대: 25개소 1,740백만원
 -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안정생산 기반 조성: 43개소 2,570백만원
 -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기술 보급: 39개소 1,927백만원
- 현장 및 기술 중심의 디지털 농업 기반 조성·보급
 - 스마트기기 활용 모니터링 및 환경제어로 생육환경 최적화: 23개소 786백만원
 - 화색변화 등 생육장애 예방을 위한 화훼종합 기술 투입: 12개소 240백만원
 - 과수 물관리 자동화 및 자율 방제기술 현장 확산: 7개소 302백만원
 - 느타리버섯 병재배 스마트 재배사 구축 등: 3개소 130백만원
- 예찰포(진단실) 운영 및 방제비 지원 등을 통한 예찰·방제 체계 구축
 - 농작물 병해충 예찰·관찰포 운영: 187개소
 - 병해충 방제비 지원: 47개소 3,384백만원(국비 2,784, 도비 600)
 - 농작물 병해충 예찰회의 개최 및 발생정보 발표: 12회
 - 과수화상병 약제방제 예측시스템 구축: 10개소 400백만원
 - 천적 이용 병해충 방제시범 등 병해충 시범사업: 18개소 470백만원
 - 검역병해충·돌발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지원: 61개소 2,697백만원

□ 축산·곤충산업 활성화 기술보급사업 전개

-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기술보급사업 전개
 - 생체·유전정보 활용 생산성향상 기술보급: 11개소 1,300백만원
 - 사육환경개선 및 가축질병예방 기술보급: 23개소 1,692백만원
-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축산·미생물 과학영농서비스 기능강화
 - 초유은행 확대(11개소) 및 품질분석 기반조성: 4종 500백만원
 - 기능성·유용미생물 공급기반 조성: 18시군 2,936백만원
- 곤충산업 활성화 「2022 경기곤충페스티벌 개최」: 2022년 10월 계획
-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추진: 32회, 96시간

□ 농촌자원 활용 융복합산업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가공창업·보육 지원: 12시군
- 공동이용가공시설 개선, 장비보완 등 가공기반 지원: 13개소
- 지역농산물 활용 소규모 가공창업 활성화: 13개소
-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및 신기술 적용 상품개발: 7개소
- 지역 유망 자원을 활용한 관광코스 개발, 해설사 육성 등 기반조성: 1개소
- 지역 향토음식 계승 확산 및 향토음연구회 전문역량 강화: 5개소
- 농작업 현장 맞춤형 시범사업 추진: 4종 18개소
- 농업인 안전의식 확립 및 실천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 도·농상생 협력 농업 육성

- 도시민 및 전문가 참여형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 도시농업 7개사업 38개소 사업추진으로 텃밭조성 및 전문교육 운영
- 유관기관과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확대 보급
 - 경기도 31개시군, 46개 치매안심센터, 92개 농장 연계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 경기도 치유농업센터 구축을 통한 거점운영 기반마련
 - ('22년) 치유농업센터 운영 외부환경조성(6,800m²): 실습텃밭, 치유정원, 쉼터 등
 - ('23년) 치유농업센터 실내교육장 및 전시실 조성(900m²): 실내교육장, 전시실 등
 - * 치유농장 품질인증 교육 및 관리, 치유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역할 수행
- 농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 확대 운영
 - 학교교과와 연계한 농장 체험프로그램 다각화 및 동영상 등 제작 지원
 - 교육청, 특수학교 등과의 협업을 통한 지속적 비대면 체험기반 마련
- 중소농업경영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판로개척 지원
 - 강소농 및 청년창업농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컨설팅 지원
 - 강소농 기본→전문→최고과정의 단계별 교육을 통한 전문역량 강화
 - 소득 안정을 위한 농가 역량향상 컨설팅 및 경영개선 지원
 - 민간전문가 활용 전문컨설팅에 따른 중소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추진
 - 컨설팅 및 교육결과 구체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3개사업 44개소
 - 자율모임체 육성(3개소), 중소농가 브랜드 개발(20개소) 및 경영개선지원(21개소)

□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마케팅 지원

- 가공제품 마케팅 역량진단, 교육 및 현장 컨설팅, 유통판로 개척활동 등
- 경기도 개발 신품종 농산물 생산농가 온라인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 농업인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육성·활성화 및 관련 기술·시설 지원

4. 농촌지도사업의 비전과 목표

농업의 성장동력 창출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중점 추진 방향

- 지역농업 활성화 지원 및 전문 농업인 육성
- 지속 가능한 미래 대응 농업기술 보급 확산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치유농업 기술개발

주 요 추 진 과 제

- ◆ 미래농업 변화 대응 농촌지도 기반 구축
- ◆ 신속하고 정확한 농촌진흥사업 홍보 강화
- ◆ 농업·농촌의 핵심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 ◆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교육
- ◆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 및 안전먹거리 확보
- ◆ 원예·특작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보급
- ◆ 축산·곤충 산업 활성화 기술보급사업 전개
- ◆ 농촌자원 활용 융복합산업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 도·농상생 협력 농업 육성
- ◆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마케팅 지원